

「유료도로법」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서

구분	내 용
1. 부과대상자	○ 서서울도시고속도로(주) 대표이사 김성훈 (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(가산동))
2. 부과원인 및 부과예정금액	○ 집수정 침수에 따른 조치지연으로 34시간 15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함 * 「유료도로법」 제23조의3제2항 위반 ○ 부과금액 : 금330,352,850원 * 「유료도로법」 제25조의2제1항제1호,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1(기준액 367,058,722원, 감경 1/10)
3. 관할 행정청	○ 서울특별시청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
4. 납부기한, 방법 및 수납기관	○ 별도 납부고지서 참조
5. 미납부 시 불이익	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금지급 정지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6. 기타	